

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

과업명	<2022 ACC 국제나쁜영화제> 행사 운영 용역		
사업기간	계약체결일~ 2023. 1. 31.	추정금액	₩220,000,000원
법적근거		<p>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3호</p> <p>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	
긴급 입찰공고 사유		<p>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5항 2호</p> <p>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본 용역의 목적은 실험영화 행사를 연례 “영화제”로 전환하여 대중성과 실험성을 겸비한 국내외 작품 상영 및 융복합 전시를 개최하고자 함.○ 해당 용역의 과업은 상영작 제작, 초청자 관리, 행사장 조성 디자인 및 구성,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, 아카이브에 이르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함. 이에 상영작 제작과 참여자 섭외 및 행사장 조성 디자인 진행을 위한 용역의 조속한 착수가 불가피함.○ 위와 같이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을 통한 계약 ·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			

작성자: 콘텐츠기획과 주무관

장미현

확인자: 콘텐츠기획과 학예연구관 김지하

김지하